

#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757
----------	------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27일

발의자 : 정병용 의원

## 1. 제안이유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안 제5조)
- 마. 사무의 위탁·운영(안 제6조)
- 바. 홍보 및 포상(안 제7조~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라. 기타사항 : 덧붙임
-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 ~ 10. 26.
  - 의견내용 : 의견없음
- 바. 부서협의 결과(문화정책과) : 기한 내 회신 없음

##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남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하남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 2. 3.]

## □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시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3.4.13.>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및 시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3. 09. 27.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8-03	복지문화국 문예관광과	
2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01	문화관광체육 국 문화예술과	
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5-17	경제문화국 관광문화체육 과	
4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1-05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5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2-21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07-26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10-27	청년문화국 청년정책과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1-04	교육복지국 청년정책과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07-13	관광경제국 일자리청년과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09-14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11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02-23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8-03	행정국 문화관광과	
13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0-17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1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9-27	행정안전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2-31	문화체육교육 국 문화정책과	
16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20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